1주 간의 개념과 연장근로 규제방식

▷ 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
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[**1주일 사이**의 **실제로 근로한 시간**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]

▷ 연장근로시간 규제방식

제50조 [기준근로시간]

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53조 [50조에 대한 연장 근로 한도 제한]

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6조 [53조에 허용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가산수당]

사용자는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연장근로시간(휴일근로 포함)

▷ 사례 (실근로시간 44시간, 연장 4시간)

요 일	월	화	수	목	금	토	일
근로시간	8	8	0	8	8	8	4

√ 1주 간의 시작과 휴일은 특정 요일과 무관

√ 연장가산수당은 휴일 여부와 무관

√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시 발생

연장 ·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여부

- ▷ 청구권 : 연장 · 야간 · 휴일 가산수당 별개의 소송물
- ▷ 제도의 취지

연장근로억제 길이 자체 규율 (양적인 측면)

야간근로억제 특정한 시간대, 위치규율 (질적인 측면)

휴일근로억제 근로의무 없는 특정한 날, 위치 규율 (질적인 측면)

연장 · 휴일가산수당 각 인정 판결

▷ 한양학원 사건 (대법원 96다38995)

요 일	월	화	수	목	금	토	일
근로시간	9	9	9	9	9	9	9

√ 연장근로시간: (9시간 * 7일 - 44시간)

√ 휴일근로시간 : 실제 휴일일수 * 9시간

√ 연장가산수당과 휴일가산수당 각 지급

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

▷ 일자리 창출: 13~16만 개

특수고용, 5인 미만, 특례사업, 적용제외사업 제외		주 52시간 :	초과 근로자	고용창출 가능인원(천명)				
		근로자수 (천명)	주당 근로 시간합계 (천시간)	52 시간	48 시간	44 시간	40 시간	
전	체	955	6,475	125	135	147	162	



연장 · 휴일가산수당 각 인정 시 기업부담

▷ 기업부담 : 약 5조 원 [2016년 피용자 보수총액 736조의 0.68%]

특수고용		기업부담				근로자수령		
5인 미만 적용제외 사업 제 외	① 휴일연장 근로수당 소 급 분	② 사 회 보험료 추가분	③ 인건비 증 가 =①+②	④ 법인세 절 감	⑤ 기 업 부담액 =3-4	⑥ 근 로 소득세	① 사 회 보험료 추가분	8 수령액 =①-⑥-⑦
전 체	56,033	5,917	61,950	12,080	49,870	9,245	4,712	42,075

* 청구권자 172만 명이 즉시 소를 제기하여 전액 수령하는 경우 가정

(단위 : 억 원)

기 업	정	부	근 로 자
부담액 ⑤	세금 ⑥-④	사회보험료 ②+⑦	수령액 ⑧
-5.0조원	-0.3조원	+1.1조원	+4.2조원